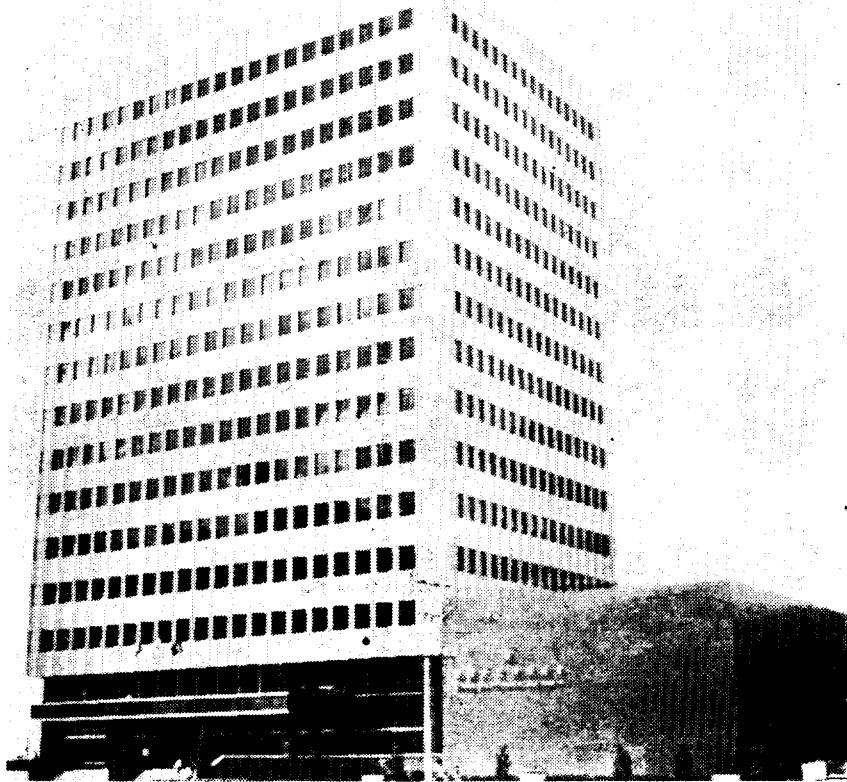


創立10周年을 맞은

韓國火災保險協會



1973년 2월 6일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険加入에 關한 法律”(法律 第2482號)이 制定, 公布되고 이 법률의 受任機關으로 韓國火災保險協會가 탄생 된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른바 鎮壓消防은 정부가, 豫防消防은 民이 각기 主導한다는 政策上의 調和속에 民間機關으로 協會가 設立된지 10년이 지난 것이다.

여기 火災의 豫防機關으로서 뿐 아니라 保険企業의 社會的 責任과 保険資產의 社會還元이라는 責務까지 맡아서 이제 総合防災機關으로까지 발전한 韓國火災保險協會의 지난 10년을 再照明해보고 새로운 跳躍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編輯者 註>

名實共히 防災專門 機關으로 發展되어야

朴 相 銀<재무부 증권보험국장>



創立十周年을 맞이한 韓國火災保險協會에 대하여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60年代 우리나라는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인 遂行으로 飛躍的인 經濟發展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反面에 이에 隨伴한 各種 災害要因도 增加하였으며 특히 大型建物의 增加에 따라 人命과 財產에 莫大한 損害를 招來하는 大型火災가 發生하였습니다. 1971년 大然閣호텔火災(死亡 163名, 負傷 63名)와 翌年 12月에 發生한 서울市民會館의 大火災(死亡 53名, 負傷 76名) 등은 國家의 次元에서의 防災對策과 災害發生時에 對備한 制度의 補完策이 切實하게 必要하게 한 一聯의 罷災事件이었습니다.

따라서 政府는 火災에 對한 專門의 研究와 點檢, 弘報등을 專擔할 機構의 設立과 애써 이룩한 經濟發展의 結實인 여러 施設들이 不意의 火災로 燃失될 경우, 이를 迅速히 復舊하고 人命被害에 대해서는 適正한 補償을 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을 期하도록 1973년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法律 第2482號)”를 制定, 公布하여 建物所有者로 하여금 所有建物의 火災로 인한 第3者의 身體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擔保하는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토록 하였습니다.

同 法이 施行된지 10년이 지난 現時點에서 그간 화재보험협회가 使命感을 갖고 立法目的에 副應하여 成功的으로 業務를遂行하여 온 것은 貴協會 任·職員이 一致團結하여 努力한 結果라 생각하며 이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나다. 그 동안 協會가 이루한 成果를 보면 火災豫防活動의 土壤가 되는 技術向上에 寄與하였고, 防火關係者들에 대한 教育을 통하여 防災能力을 向上시켰으며, 一般國民에 대하여는 防火意識의 鼓吹와 主要建築物의 不良施設에 대한 改善誘導 및 安全點檢을 통해 保險引受技術의 向上과 効率의in 危險分散등에 크게 寄與하여 왔으며 특히 特殊建物의 罷災率의 減少現象은 火災保險協會 設立 이래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貴協會가 그동안 發展的으로 諸般業務를遂行할 수 있었던 것은 保險의 公동인수제도를 통한 財源이 뒷받침이 되었음을 否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現在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保險產業의 自律경쟁·體質強化와 保險서비스向上 등 諸般與件을勘案할 때 보험회사의 편의에 의한 경쟁제한요소를排除하여 나감으로서 火災保險協會의 本來의 機能을 強化하는 方向으로 協會의 性格도 再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貴協會는 이러한 여러 與件을 考慮하여過去10年 동안 쌓아 올린 業績을 土壤로 火保法의 立法趣旨에 副應할 수 있는 火協의 固有業務인 防災活動을 더욱 科學的이고 効果的으로遂行함으로써 명실공히 방재전문기관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產業施設의 大型化에 따른 각종 危險이增加하고 있는 현실을勘案하여 전 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분발하여 火協發展의 活路를 스스로開拓해 나가는 主役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귀협회의 無窮한 發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